

●국토교통부고시 제2025-11호

지역개발사업 전문평가기관 지정

「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의 사업성 등을 평가할 전문평가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.

2025년 1월 14일

국토교통부장관

1. 지역개발사업 전문평가기관 지정 목적

- 「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사업성 평가 업무의 전문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문평가기관을 지정·운영

2. 지정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

-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
 - (대표자) 정 창 무
 - (주 소)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539번길 99
 - (위탁업무)
 - ① 지역개발사업 단위사업 사전타당성 평가 등 지역개발사업 사업성 평가
 - ② 지역개발계획 및 지역개발사업 단위사업 집행결과 평가 등

3. 지정 기간

- 2025. 1 ~ 2025. 12. 31.